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 법률

법률 제4,021호(1988년 12월 26일)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비과세이자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
2.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1,000만원 이하의 예탁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3. 근로자 등의 주식보유의 확대를 통하여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주신탁의 이익

제1조의 2의 제목중 "소액가계저축"을 "소액가계저축 등의"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과 우리사주 조합원이 받는 배당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권예탁증명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의제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등의 비과세"를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3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 가액 불산입특례) 우리사주 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주식에 한한다)의 가액은 상속세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공법인(별표의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9조 제2항 제1호내지 제8호에 규정된 공공법인
   100분의 5
2. 제1호 이외의 공공법인

〈과세표준금액〉	〈세 율〉
3억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 10
3억원초과	3,00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제9조 제2항중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제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제3항중 "제43조의 2·제55조"를 "제43조의 2"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 및 제9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은 법인세법 제62조에 규정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익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안의 금액인 경우로서, 익금에 산입하게 된 사유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나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제1항중 "법인세(제68조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를 "법인세"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①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기술비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내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외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술소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제1항중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자"로 하고, 동조 제4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중 "내국인이 수출·관광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조업·광업 및 수산업의 수출사업"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중 "산업설비수출촉진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 제1항중 "100분의 15(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를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2조중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로 하며, 동조동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 내국인이 공공법인중 별표의 제47호·제65호·제68호 내지 제71호·제74호 및 제94호의 법인에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50조 제1항중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로 한다.

제51조 내지 제53조·제55조 및 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 제1항중 "특별부가세를"을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로 한다.

제59조중 "특별부가세를"을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로 한다.

제60조 제1항중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조합과 그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67조의 2 제4항을 삭제한다.

제67조의 6 제3항중 "8년"을 "5년"으로 한다.

제67조의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 10 (간척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특례) 내국인이 1976년 12월 31일까지 간척 또는 개간이 완료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척지 또는 개간지인 농지를 1988년 12월 31일 현재 20년이상 임차하여(임차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임차기간을 포함한다) 경작하는 농민에게 199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제69조 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⑥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 또는 차입하여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제73조 본문중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을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지하철도공사"를 "지하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기자재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농촌인력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구 등 어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74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6. 심신장애자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7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을 삭제한다.

제77조 제76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국산승용자동차"를 제1항의 국산승용자동차"로 한다.

제78조의 2를 삭제한다.

제79조 제1항중 "제75조 내지 제78조"를 제75조·제77조 및 제78조"로 하고, 동조동항중 "5년이내"를 "5년(제7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는 물품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내"로 한다.

제81조 제5호중 "1,5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재산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를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제8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 2 (전화사용료에 대한 방위세 경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용료에 대한 방위세의 세율은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세율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제83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5조 제2항중 "취득세(제68조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를 "취득세"로 한다.

제85조의 2중 "재산세(제68조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를 "재산세"로 한다.

제87조 제2항중 "제14조·제28조"를 "제14조"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제14조·제28조"를 "제14조"로 하며, 동조 제5항중 "제69조 또는 외자도입법"을 "외자도입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제15조 제1항·제40조의 4 제1항·제85조 제2항 및 제85조의 2의 규정과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과 외자도입법의 규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88조 제1항중 "제14조·제16조"를 "제14조"로, "제22조 내지 제25조·제27조 내지 제29조"를 "제22조·제23조·제25조·제27조·제29조"로, "제46조의 3·제53조"를 "제46조의 3"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제19조 제4항"을 "제19조 제3항"으로, "제26조·제37조 및 제55조"를 "제26조 및 제37조"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제17조·제18조"를 "제18조"로 한다.

제89조 제1항중 "제17조 제2항·제18조"를 "제18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7조 제2항·제18조"를 "제18조"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과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당해 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함에 따라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 당해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0조 본문중 "제18조·제19조 제4항"을 "제18조·제19조 제3항"으로, "제46조의 3·제55조"를 "제46조의 3"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제19조 제4항"을 "제19조 제3항"으로 한다.

제91조 제1항중 "제19조 제4항"을 "제19조 제3항"으로, "제46조의 3·제55조"를 "제46조의 3"으로 한다.

〔별표〕중 제6호"농어촌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를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제9호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민주신탁의 이익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4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우리사주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공법인의 법인세 및 방위세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공공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6조 (기술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대여 또는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 내지 제61조 및 제67조의 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67조의 6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양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예수하는 외국환은행이 외화채무 등의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농업용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4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연구용시설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특별소비세면제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인지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제5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전화사용료에 대한 방위세 경감에 관한적용례) 제8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화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8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 제7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 또는 입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85조 제2항 및 제85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기술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가격변동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이월결손금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종전의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외국인출자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출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외국인출자기업 및 외국인출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68조 및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하거나 예수한 외화채무 이자 및 수수료 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9조 및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특별소비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의 목적으로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도입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면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6조 및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 (관세경감물품의 양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의 양도 등에 대하여는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7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종전의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 법률

법률 제4,024호 (1988년 12월 26일)

특별소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항 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4종 제1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종

제1류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제외한다)·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60
2. 귀금속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제2류

1. 고급모피와 동제품(토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를 제외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60
2.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60

3. 골프용품과 수렵용 총포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60
4. 고급가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5. 특수화장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2종

1.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2. 냉장고와 냉동고(전기·가스·유류식의 것을 말한다)
가. 대형의 것(유효내용적이 0.3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소형의 것(대형의 것외의 것을 말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3.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4.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와 동 관련제품
가. 대형의 것(텔레비젼영상면을 내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50.8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소형의 것(대형의 것외의 것을 말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다. 동 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5. 전기음향기기(스테레오식이 아닌 휴대용의 소형음성녹음·재생의 것을 제외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6.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7. 승용자동차(배기량이 800씨씨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배기량이 1,500씨씨 이하의 것과 사륜 구동의 지프형의 것 및 2륜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1,500씨씨 초과 2,000씨씨 이하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다.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는 것과 캠핑용 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8. 모타보트·요트와 동 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9. 피아노
가. 그랜드형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기타의 것(전자올겐과 신디사이져를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0. 고급시계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1. 텔레비젼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12. 영사기·촬영기·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13.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4. 크리스탈유리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5. 설상·수상스키용품과 동 스쿠터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제3종

1. 커피와 코코아 및 카카오마스
가. 커피와 코코아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카카오마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 사 탕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3. 청량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4. 기호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5. 자양강장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4종

제1류

융 단
가. 모제품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기타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1조 제3항 제3호중 "500원"을 "1천원"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카지노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3만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천원

제1조 제3항 제6호중 "설비 및 용품의 이용대가를 포함한다"를 "설비의 이용대가를 포함하되, 용품의 이용대가는 이를 제외한다.

제5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환자수송 전용의 것, 영업용의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배기량이 1,500씨씨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로서 개호를 요하는 자의 개호에 전용되는 것(배기량이 1,500씨씨 이하의 것에 한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중 "제5조 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제5조 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동항 "제1조 제8항"을 "제1조 제9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부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액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와 당해 원재료로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원재료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수출용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면세물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물품을 제외한다)과 면세로 반출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